

◎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-0921호

◎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 2024-007호

**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-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-**

2025년도 「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」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
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2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
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장 목인희

I.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‘각 과제제안요구서(RFP)’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정예정 과제 수는 평가절차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구분	RFP명	지원규모 (1차년도)	지원기간	지원대상/ 과제구성요건	선정예정 과제 수
3.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	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328백만원 이내/년 (246백만원)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·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· 주관연구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/위탁 연구개발 과제 추가 구성 가능 ·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기업 참여 필수	1
	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	609.2백만원 이내/년 (456.9백만원)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·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· 주관연구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/위탁 연구개발 과제 추가 구성 가능 ·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기업 참여 필수	1
총 합계					2

II. 신청요건

□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별로 확인 필요

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각 신규과제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

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 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업단에 사전문의 바람

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 사전 확인 요망

□ 신청 및 수행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

- 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- 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-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
- 과제제안요구서(RFP) 기획(조정 및 보완과정)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본 공고에 주관·공동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참여가 제한됨
- 주관연구책임자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전체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수행 가능
 -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선정된 연구자의 경우, 해당 과제 종료 시까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타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원 불가

Ⅲ. 신청방법

□ 공고 및 접수처

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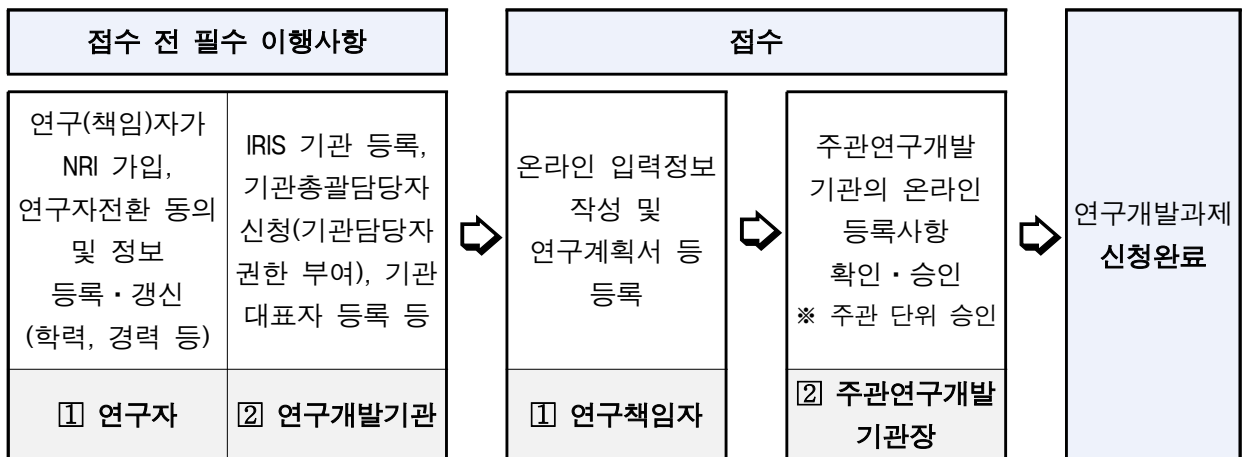
▶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 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사업공고
- ②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사업공고
- ③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(www.kdrc.re.kr) 사업공고
- (접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□ 신청 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 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IRIS 회원가입, ②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 연구자는 제외)

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 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 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□ 서류제출기한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 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※ **신청 마감시간(14:00) 엄수 (마감 기한 연장 불가)**

※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‘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 (www.kdrc.re.kr)’ 알림마당-공지사항에 공지함

※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마감 시간 임박 시 (마감 2일 전부터)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 시간으로부터 **충분한 여유시간**을 가지고 신청 요망

공고단위 (RFP명)		연구책임자 과제신청(전산입력) 마감일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마감일
3.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	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2025. 02. 03	2025. 02. 03
	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	14 : 00	14 : 00

-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**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 대상에서 제외됨**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

V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

-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(2024.2.29. 개정)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
□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

- ※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- ※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 필요하며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 및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○ 기업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 도입비·연구 재료비		
$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} = \frac{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 \times 100$			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,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 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, 1억 미만인 경우는 ‘연구개발과제 평가단’ 에서 심의, 1억 이상인 경우는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 에서 심의

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,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
 -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,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&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

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

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	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	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	납부 상한
대기업/공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20%	R&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
중견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10%	R&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
중소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5%	R&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

※ 자세한 내용은 ‘공고안내서’ 참고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,
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
- 사업공고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,
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,
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(www.kdrc.re.kr) 등
- 담당 기관 :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(www.kdrc.re.kr)

○ 담당자 안내

- 과제제안요구서(RFP) 안내, 공고 및 평가 관련

구분	공고단위(RFP)	과제 접수, 평가 일정 및 절차 관련 사항	과제제안요구서(RFP) 관련 사항
3.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	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02-3668-7393 02-3668-7392	02-3668-7401 02-3668-7403
	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	02-3668-7402	02-3668-7404

- **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1877-2041)**

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~ 18:00